산업안전 Q&A



전임 안전관리자가 작성했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의 내용 중 사용항목별 금액이 부적절하여 일부계획금액을 변경하고 세부계획을 새로이 세웠으나 발주처에서 이를 문제삼아 변경이 불가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비는 설계·변경 등에 의해 계획금액이 유동적(사용기준내에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측 주장이 맞는지요.

또한, 타워크레인(자가장비)완성검사시일부부품의 교체를 명령받아 시행하였는데부품비용과 설치수리비(인건비)가발생하였습니다.이부품들 중일부만이 안전관리비항목에 해당되어 순수부품비용의 합산금액 중 해당부품이 차지하는 비율을 인건비부분에 작용하여이의 일부를 안전관리비로 청구하고자 하는데 이 또한 적법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 2002-15호)제7조제1항에의한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사용내역및기준"에서 정한범위내에서 사용하도록하고있어

-동기준에서 정한 범위내에서는작업의 특성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별표2의 동기준에는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고장시 교체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되어 있으므로,귀질의 내용이 크레인의 비상정치장치,권과방지장치,과부하방지장치 등 안전장치의 교체 비용(부품비 및 인건비)이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제2항및제58조에의하면노동부령에정하는위험기계·기구는검사를받아야한다고규정되어있는바,당사의승강기(덤웨이터)는용량0.3톤,바닥면적0.88㎡,높이약25m이므로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검사대상기계가아니나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는검사대상기계에해당됩니다.이에산업안전보건법이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보다상위법이므로검사를받지않으려고하는데,이런경우어느법을따라야하는지답변부탁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검사대상 승강기는 "승용승강기 또는 적재하중이 1톤이상인 화물을 승강하는 승강기"로 규정하고 있어 적재하중이 03톤인 귀사의 승강기는 산안법상 검사대상은 아닙니다.

다만,귀사의 승강기가 산안법상 검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산업자원부소관법률인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승안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승안법상 검사대상에 해당된다면 동법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산업안전 Q&A

저희 현장은 정보통신공사로써 사무직과 현장직 인원의 비율이 21정도 됩니다. 사무직 은전체 공종에 설비시스템 공종이라는 부분으로 시스템 안정화 소프트웨어의 개발 서 버의 구축 등의 업무를 하고 있고,이에 현장직은 통신장비를 외부에 달아 중앙사령실에 서이것을 볼수 있게 만드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실내에서 설비시스템 구축하 시는분들의 작업은 대부분 장시간 고정적으로 하는 일이어서 허리의 통증을 자주 호소 합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인간곳학적인 설계를 바탕으로 한 의자로 교체하고자 하는데 안 전관리비의사용이가능한지요.

건설업 · 선박건조 · 수리업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 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하 는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 야하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제2002-15호)제7조(별표2제 8호)에 의거 안전관리비 총액의 2% 이내에서 (별표2제1호내지 제7호)사용항목 및 본사 안전전 담부서의 안전전담직원 인건비 · 업무수행출장비를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 건축물을 짓는데 건축.전기.통신.소방.기계분야로 분리발주하여 시공하고 있습니 다. 표준안전관리비를 산정하려고 하니 타 공사와 분리발주되어 시간 · 장소적으로 독 립하여 행하는 전기공사나 정보통신공사는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현장은 건축물을 짓는데 전기나 통신은 분리발주(시공사가 다름)되었지만 건축공종과는 병행하여야 합니다.이러한 경우 전기공사의 표준관리비 요율을 건설공 사(갑)으로하여야되는지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로하여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공사의 종류는 별표5의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예 시표에 의하면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의 경우, 타공사와 분리발주되어 시간·장소적으로 독립 하여 행하는건설산업기본법에의한준설공사,조경공사등과전기공사업법에의한전기공사등 을 포함하고 있으나, 타공사와 병행하여 행하는 경우는 이를 건설공사(갑)으로 분류토록 되어 있 습니다.



따라서 귀 현장과 같이 한 건축물을 시공하는 동일현장으로써 분리발주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 사 등은 시간·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시공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건설공사(갑)으로 적용하여 산 업안전보건관리비를계상하여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